공고 제2022 - 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2022년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에서는 청년 소상공인 기업의 사업화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초기 소상공인 청년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안정적인 창업 성공을 위한 **『2022년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21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변경사항

1. 변경사유 : 청년 소상공인 참여율 제고를 위한 자격 완화(지침범위 내)
2. 변경내용
   1) 지원대상 : 창업 2년 이내 ⇒ **창업 5년** 이내
   2) 청년 1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 청년 1인 이상을 고용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22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 지원자격 : **청년1명 이상 고용중인 창업 5년 이내의 도내 청년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소상공인 규모기준 포함기업**(참고1 참조)**

- 대표자만 있는 경우 제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

○ 지원규모 : 72업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2. 12. 31일까지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15백만원 이내)** ※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서명 등) 원본제출

구 분	사 용 용 도	비고
기술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비(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 시제품 제작 등 (기획, 개발, 인건비 제외), 기자재 구입비, 설계 및 디자인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등 **※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기자재 구입만 인정, 기존 제품 생산을 위한 단순재료 구입은 제외**	
홍보지원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연계 홍보 - 홍보물 (리플릿, 카달로그 등) 제작	
판로지원	- 쇼핑몰, 홍쇼핑,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 기타 마케팅비 등 **※ 기타경비 등 운영비는 사용 불가**	
시설개선 지원	- 사업장 환경개선 임차비용(포스기기 등) **※ 장비구입,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업체 선정 진행 시 비교 견적 필수**	

- **교육지원(온라인)** : 기업 및 청년 직무능력 향상 등**(연 최대 20만원 이내/후지급)**
- **경영컨설팅** :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등 경영전반**(연 최대 20만원 이내/전문가 매칭)**
- **자기계발** : 자격증, 외국어 등 교육 및 도서구입 등**(연 최대 20만원 이내/후지급)**

※ 단순여가 및 스포츠 등은 배제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승인통보	⇨	협약체결	⇨	교육, 자기개발 지원(별도공지)	⇨
(운영기관)		(운영기관 → 기업)		(운영기관↔기업)		(운영기관)	
3월~예산소진시까지		3월 ~		4월 ~		4월 ~ 11월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월별		월별		수시

2. 기 업 모 집

❍ 지원대상(2개 모두 충족)

- **창업 5년 이내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창업기준) 2022.1.1.을 기준으로 5년 이내(2017.1.1. 이후 창업자)

- **청년을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

  (단, 청년 1인 이상이 정규직일 경우 선정 시 가점부여)

❍ 신청 제외 대상**(참고2 참조)**

① 소상공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②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충북 이외 지역 사업자
③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④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⑤ 소비, 향락업

○ 선정방법 : 전문가 및 내부위원을 통한 서면심사

○ **접수기간 : 2022. 3. 21.(월)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충북청년희망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처 : 충북청년희망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로비층 청년지원부 청년 소상공인 성장지원 담당자 (☎ 043-266-1508~10)

○ **제출서류**

① 2022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각 1부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는 증빙 X, 4대보험만 가능)

③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창업 1년미만일 경우 해당없음)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아래 중 택일하여 제출) 1부**(참고3 참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국민건강보험 사회통합징수포털)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홈텍스)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⑤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업참여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⑦ 기타 창업교육 이수, 산업재산권, 창업경진대회 입상 등 증빙서류
* 세부사항은 붙임서류 파일 참조(붙임_제출서류)

※ 제출 미비서류가 발생 시 사유기재(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3.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청년고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 해지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청년고용 및 운영과 관련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 참여기업 선정 후 지원관련 절차는 운영기관과 협의 후 추진 예정

4. 문 의 처

○ (재)충북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충북청년희망센터 (☏ 043-266-1508~10)
주소 :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로비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청년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 담당자 앞

붙임 : 제출서류 1부

참고 : 1.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1부
2. 청년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종 1부
3. 소상공인 증빙서류 안내 1부. 끝.

참고1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0인 미만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2 청년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종

업종분류	업종	분류코드
1.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여관업	55112
	나. 그외 기타 숙박업	55909
	다. 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라.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마. 기타 주점업	56219
	바. 비알콜 음료점업	56220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19
	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마.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바.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9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골프장 운영업	91121
	나.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다. 무도장 운영업	91291
	라.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9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이용업	96111
	나. 두발미용업	96112
	다. 피부미용업	96113
	라. 기타미용업	96119
	마. 욕탕업	96121
	바. 마사지업	96122
	사.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129

업종분류, 업종, 분류코드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3 소상공인 증빙서류 안내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①**국민건강보험** 사회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접속 → ②사업장 로그인 → ③사업장 주요서비스의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 ④고지년도 검색(2020년 2월) → ⑤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⑥프린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①**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edi.nhis.or.kr) → ②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전체서식 → ④사업장EDI서비스 → ⑤받은 문서 → ⑥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⑦건강보험 체크 → ⑧고지년도 검색(2020년 2월) → ⑨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⑩프린트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②로그인 → ③My홈택스 → ④세금신고내역 → ⑤원천세, 제출년도, 조회하기 클릭 → ⑥프린트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①**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온라인자료 제출 → ③신청서 작성 → ④확인서 발급	